

본 약정서 말미에 기재된 채무자 (이하 "채무자"라 함.)는 채권자인 홍콩상하이은행 _____ 지점 (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본 대출거래를 함에 있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의 사항을 준수키로 약속하며, 본 약정서 말미에 기재된 연대보증인 (이하 "보증인"이라 함)은 본 약정서상 모든 채무에 대하여 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지기로 한다.

제 1 조 (거래조건)

본 약정서상 거래조건은 다음과 같다.

(거래방식이 여러 개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사항들 앞에 있는 각각 "□"내에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한도) 금액	금 원정 (\)		
대출 종류	거래 구분	<input type="checkbox"/> 개별거래 <input type="checkbox"/> 한도거래 (회전기간)	
대출 기간	년	대출 만료일	년 월 일
대출 이자율	연 % (<input type="checkbox"/> 변동 <input type="checkbox"/> 고정 <input type="checkbox"/> ()개월 고정 후 변동)	지연 배상금률	연 %
대출이자율 및 지연 배상금률 계산방법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다		
대출 실행 방법	<input type="checkbox"/> 대출개시일에 전액 실행한다 <input type="checkbox"/> 본인의 청구가 있는 대로 실행하거나 본인이 본인의 대출거래계정에서 대출금을 인출함으로써 일부 또는 전액 실행한다. <input type="checkbox"/> 대출개시일로부터 ()년 ()월 이내에서 매()개월마다 분할 실행한다. <input type="checkbox"/> 대출개시일로부터 ()년 ()월 이내에서 증빙서류나 현물 등에 의하여 은행이 필요 금액을 확인하고 분할 실행한다.		
상환 방법	<input type="checkbox"/> 최종 대출실행 후 매()개월 마다 (<input type="checkbox"/> 원금 <input type="checkbox"/>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한다. <input type="checkbox"/> 대출만료일에 전액 상환한다. <input type="checkbox"/> 대출 실행일로부터 ()년 ()개월 동안 거치 후, 매()개월 마다 (<input type="checkbox"/> 원금, <input type="checkbox"/>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한다. <input type="checkbox"/> 대출거래계정에 입금함으로써 자유로이 상환하되, 대출기간 만료일 또는 회전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한다. <input type="checkbox"/> 기타 :		
이자 지급 방법	이자는 매 1개월 단위로 해당월 <input type="checkbox"/> 10일, <input type="checkbox"/> 25일, <input type="checkbox"/> 기타 ()일에 지급 (한도거래의 경우 대출거래계정에서 차기)키로 한다.		
담보 제공	<input type="checkbox"/> 부동산 담보 (채권 최고액 월, 제 순위) <input type="checkbox"/> 신용 <input type="checkbox"/> 기타:		

제 2 조 (추가대출)

추가대출거래신청서를 작성한 채무자는 제1조의 거래조건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추가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 ① 추가대출한도의 산정: 최초 대출일로부터 추가대출거래를 신청한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일시 상환한 금액을 하도록 하되, 추가대출 신청일 현재 최초 대출금 전액이 상환되거나 당초 상환계획에 따른 상환 금액의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단, 추가대출 한도의 최저 금액은 10백만원으로 한다.
- ② 추가대출 신청방법: 은행 방문 또는 유선 (전화, 팩시밀리)에 의해 가능하다. 단, 제3자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 제3자 (담보제공자) 및 연대보증인은 채무자와 함께 은행을 방문하여 추가 대출 신청서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 ③ 추가대출금의 거래 조건
 1. 대출이자율, 대출만료일, 지연배상금률, 대출이자율 및 지연배상금률의 계산방법, 상환방법, 이자 지

급방법, 담보제공 등은 본 대출약정서 제1조의 거래조건과 동일하며, 기타 본 약정서의 제 조항이 추가대출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2. 대출실행방법: 채무자의 신청 후 은행은 대출을 승인하는 즉시 추가 대출신청서상의 지정계좌로 입금한다.
3. 취급 수수료: 은행은 본 추가대출에 대해 대출금액에 관계없이 건 당 100,000원을 취급수수료로 징구할 수 있으며, 대출 실행 시마다 이를 차감하고 지급한다.

제 3 조 (대출 실행)

본 약정서에 의한 대출은 대출 실행일까지 다음 사항이 충족되는 것을 전제로 실행된다. 단, 은행은 다음 사항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 시킬 수 있다.

- ① 채무자가 본 약정서에 의한 대출 및 장애 발생할 은행에 대한 채무이행을 위해 담보를 제공기로 한 경우, 은행 소정기준에 따라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및 예·적금 기타 금융상품에 대한 질권설정 등 제반 담보 제공이 완료될 것.
- ② 담보건물에 대하여 은행이 인정할 수 있는 종류의 보험을 가입하고 은행 앞으로 보험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질권설정이 완료될 것.
- ③ 지급불능, 파산, 화의신청,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신청 등 채무자의 신용약화상태가 발생되지 아니할 것.
- ④ 매입하기로 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할 것 (주택구입대출의 경우에 한함).
- ⑤ 은행 소정의 채권서류가 은행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으로 작성, 제출되었을 것

제 4 조 (대출이자율 및 지연배상금률 변경)

- ① 제1조 기재 대출이자율을 은행이 변경할 경우 최소 월 단위로 은행 소정의 이자율로 변경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대출이자율 변경이 있는 경우, 은행은 그 변경일로부터 1개월간 그 사실을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은행 영업점에 비치한다. 단, 그 변경이 특정 채무자에 관한 것일 경우 그 사실을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발송기로 한다.
- ③ 채무자가 본 조에 따른 이자율 변경에 이의가 있을 경우, 채무자는 이자율변경 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할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직전의 대출이자율에 의해 일할 계산된 이자와 원금 잔액 및 기타 은행이 채권보전을 위해 지출한 부대비용 등 제반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은행에 현금납입하고 은행에 서면으로 본 약정서에 의한 대출계약 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제6조에서 정한 만기 전 상환수수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④ 채무자가 본 약정서에 따른 제반채무를 이행치 아니한 경우 (계약해지에 의한 기한이익상실의 경우 포함), 그 지체금액에 대하여는 지급기일로부터 변제일까지 제1조에 기재된 지연배상금률에 의해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며, 지연배상금률은 대출이자율 (변경된 경우 그 이자율) 에 ()%를 가산하여 정하기로 한다.
- ⑤ 본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금융시장의 급박한 변화, 신탁거래를 포함한 은행거래에 관한 법령,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결의 등에 의하여 전기 대출이자율 및 지연배상금률을 변경할 수 있다.

제 5 조 (한도거래)

채무자가 은행이 정한 기본한도금액의 범위 내에서 본 약정을 맺은 경우, 아래 각 항의 내용을 따르기로 한다.

- ① 대출거래계정
 1. 채무자는 본 약정에 따른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대출거래계정을 통하여 대출금을 인출하고 대출원리금 기타 비용 등 채무자의 은행에 대한 채무를 상환할 것에 동의한다.
 2. 은행은 최초로 대출한도를 설정할 때의 대출한도 설정 수수료로서 대출한도 금액에 관계없이 금_____원을 징수할 수 있다.
 3. 채무자가 정해진 금액을 초과하여 상환할 경우 당해 초과분은 다음 지급기일에 이행되어야 하는 대출원리금 등 상환에 자동 충당되며 이에 대해서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② 이자의 지급 및 계산방법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대출금 원금 (본 항에 의하여 채무자의 대출거래계정에서 차기함으로써 본 약정에 의한 대출로 간주되는 경우 포함)에 관하여 매월 제1조에서 정한 이자 납입일 까지 1일 단위로 매일 발생하는 것으로 하되, 해당월의 이자지급기일로부터 다음 이자지급기일 하루 전날까지의 기간(대출일수의 계산은 한편 넣기 방식에 의한다)에 대하여 계산된 이자는 각 해당 월의 이자지급기일에 채무자의 대출거래계정에서 차기하고, 그날부터 본 약정에 의한 대출이 일어난 것으로 취급하기로 한다.
- ③ 대출의 연체, 전환 및 대출한도감액

1. 이자를 위 제2항에 따라 매월 채무자의 대출거래계정에서 차기하기 이전이라도, 채무자는 어느 시점의 대출금 원금 또는 그때까지 발생한 이자의 합계액이 본 약정에 의한 대출한도금액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만일 대출한도금액을 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한도초과액을 상환하기로 한다. 만일, 채무자가 위 대출한도초과금액을 즉시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 대출한도초과금액에 대하여 연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은행은 채권회수를 위한 사전 준비절차를 취할 수 있다.
2. 채무자가 한도초과 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이를 갚지 못할 경우, 채무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은행은 그 재량에 따라 일반 부동산담보부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채무자는 은행이 정한 일반 부동산담보부대출 거래 조건을 따르기로 한다.
3. 또한, 채무자가 제3조에서 열거한 어느 사항 중의 하나라도 위반할 경우에는 은행은 언제든지 채무자에게 이를 통지함으로써 본 약정을 해지하거나 대출한도를 감액할 수 있다.

제 6 조 (만기전 상환)

- ① 채무자는 제1조에서 정한 대출금의 상환기일전에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행에 신청하여 조기 상환할 수 있다. 단, 대출금 일부 상환의 경우 최소 상환금액은 1백만원으로 하고 1십만원 단위로 하여야 한다.
- ② 대출실행일로부터 ()개월에 이르기 전에 채무자가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고자 할 때에 은행은 당해 상환금액의 ()%에 상당하는 금액을 만기 전 상환수수료로서 채무자에게 지급 청구할 수 있다. 단,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은행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조기상환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대출기간이 1년 이하인 단기대출의 경우, 만기일전 3개월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2. 매월 납부하는 할부금에 포함된 할부원금의 경우
 3. 기한의 이익 상실등으로 은행이 법적조치(경매, 소송등)를 통해 대출금을 기일전에 회수하는 경우
 4.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10조(은행으로부터의 상계)의 사유로 예금과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계할 경우
- ③ 부동산 담보부 대출과 관련하여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제반 근저당 설정비 및 기타 수수료 등을 은행이 대신 부담하는 조건으로 대출이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가 대출 실행일로부터 ()개월에 이르기 전에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고자 할 때에는 은행의 총구에 따라 당해 상환금액의 ()%에 상당하는 금액을 은행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부동산 담보부 한도대출의 해지(근저당 말소)인 경우는 한도금액의 ()%에 상당 하는 금액을 은행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 7 조 (부대채무)

채무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보험료, 감정료, 수입인지대, 기타 법적절차비용 등 대출관련비용을 은행이 대신 지급한 경우 채무자는 은행이 지출한 비용에 제1조의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은행의 청구시 즉시 변제키로 하며 또한 은행이 이를 대출금에서 공제하여도 채무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치 아니하기로 한다.

제 8 조 (손해배상금)

- ① 채무자가 기한이익을 상실한 경우, 채무자는 계약해지일까지 납부 지체된 대출금 원금, 발생이자 및 동 금액들에 대한 지연배상금의 합산금액과 채무자가 실제 변제할 때까지 동 합산금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손해배상금으로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은행이 채권보전, 채권회수 및 담보권실행 등을 위해 지출한 제반비용 및 이에 대한 지연배상금은 전항의 손해배상금에 포함된다.

제 9 조 (담보)

- ① 채무자가 본 약정서에 의한 제반 채무 및 장래 발생할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키로 한 경우, 채무자는 『대출거래신청서』에 기재된 부동산에 대하여 유효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은행에 제공키로 한다.
- ② 담보물이 예·적금 기타 금융상품에 대한 질권인 경우에, 그 질권의; 효력은 원금·수익권 (본 약정 이후에 적립되는 금액을 포함함)과 이에 부수하는 이자·수익의 수익권, 특별장려금, 법정장려금 등에 미친다.
- ③ 담보는 법정절차에 의하여 처분함을 원칙으로 하되, 담보제공자가 동의를 한 때에는 은행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환가 처분하여 추심할 수 있다.
- ④ 처분된 담보물의 환가액은 은행여신거래약관 및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자의 은행에 대한 모든 채무에 충당할 수 있으며, 충당 후 부족액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그 금액을 즉시 변제하여야 한다. 위 충당 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은행은 이를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⑤ 은행에 대한 채무를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의 예금, 적금, 상호부금, 신탁, 어음, 수표, 동산 및 기타 유가증권 등에 대하여 은행이 이를 처분, 추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항에 준하여 처리하여도 이의가 없기로 한다.

제 10 조 (임대차)

채무자는 본 약정서상 대출을 위해 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건물에 관하여 타인에게 임대한 사실이 없음을 은행에게 확인하며 이와 상이함이 발견된 경우에, 은행은 채무자의 기한이익을 상실시켜 담보권실행 등 제반채권 회수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은 물론 본 약정서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 은행이 입은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제 11 조 (연대보증)

- ① 보증인은 채무자의 은행에 대한 본 약정에 의한 모든 채무에 대하여 채무자와 연대하여 상환에 관한 책임을 진다. 다만,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특별법에 의한 은행 포함한다), 주택신용보증기금, 보증보험 주식회사가 이 약정에 의한 채무를 보증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의 상환책임은 그 부분을 제외한 부분만 부담한다.
- ② 보증인은 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청구가 있기 전에는 채무자의 은행에 대한 기타의 채권과 본 약정에 의한 대출금을 상계할 것을 주장하지 아니한다.
- ③ 보증인이 동의를 한 때이거나 동등한 가치 이상의 담보교체, 동등한 자력 이상의 보증인 교체 또는 일부 변제액에 비례한 담보나 보증의 해제 등으로 인하여 보증인에게 불리한 영향이 없을 때는, 거래상 필요에 따라 은행은 다른 보증이나 담보를 변경 또는 해지, 해제할 수 있기로 한다.
- ④ 보증인이 채무자의 은행에 대한 같은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따로 담보를 제공하고 있거나 보증을 하고는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 담보나 보증은 본 약정에 의하여 변경되지 아니하며 본 약정에 의한 보증 책임과 별개의 것으로 누적적으로 적용된다.
- ⑤ 보증인이 같은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담보제공과 동시에 같은 금액으로 연대보증을 한 경우, 그 중 어느 하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한 때에는 전항에 불구하고 그 이행한 범위 내에서 다른 책임도 면한다.
- ⑥ 보증인은 이 약정에 의한 채무의 상환기일이 보증인의 동의를 받아 연장된 때에는 계속하여 제1조의 약정에 따르기로 한다.

제 12 조 (은행여신거래기본약정)

- ① 본 약정서에 의한 거래에 관하여는 본 약정서에 추가하여 은행이 채무자에게 제공한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이 적용될 것임을 채무자는 동의하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 추후 변경될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르기로 한다.
- ② 본 약정서와 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의 조항이 서로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 약정서가 우선한다.

_____년 _____월 _____일

채무자, 연대보증인, 담보제공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및 본 약정서 사

채무자 (겸 담보제공자)	성명		(인)	인지세 납부내역 대출금	
				• 2천만원 이하면제	
연대보증인	성명		(인)	• 3천만원 이하 2만원	
연대보증인	성명		(인)	• 5천만원 이하 4만원	
담보제공자 (제3자)	성명		(인)	• 1억원 이하 7만원	
공	성명		(인)	• 10억원 이하 15만원	
				• 10억원 초과 35만원	

본인확인
및 인감대조

대한민국 정부
인 지 세
남대문세무서장
후 납 승 인
2002년 26호

신용정보제공 활용동의서

- (1) 본인은 은행이 본인과의 여신거래에 관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등에 따른 신용정보(식별정보, 신용불량정보, 신용거래정보 및 신용능력정보)를 위 법령 등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등에게 제공하여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서 활용하거나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서 활용하도록 하는데 동의합니다.

(2) 본인은 은행이 본인과의 여신거래에 관하여 업무 처리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홍콩상하이은행의 대한민국 외의 본점 및 다른 지점들에게 전항의 신용정보 기타 본인과의 거래내용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본 인 _____ (인 또는 서명) 연 대 보 증 _____ (인 또는 서명)

배 우 자 _____ (인 또는 서명)